공인중개시법령 · 실무 암기시항

eduwill

2021. 3. 15. 까지 개정사항 반영

공인증개사법 한병용강사

1.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 ⇒ 등록신청×, 소공×, 중개보조원등×

결격기간	결격사유 및 결격사유해소시기
능력이 될때 까지	 ① 미성년자 ⇔ 성년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후견의 종료심판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 적용×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 ⇒ 복권
3년	 ④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 집행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 집행면제를 받은 후 □ 3년 경과 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3년 경과 ※다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결격사유 적용× ⑥ 자격취소처분 받은 자 □ 3년 경과 ⑦ 등록취소처분 받은 자 □ 3년 경과 ※사(해)/기/결/재: 이유는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 적용×
주어진 기간	 ⑧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예기간 경과 ※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 적용× ⑨ 자격정지처분 받은 자 ▷ 자격정지기간 경과 ⑩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 ▷ 업무정지기간 경과 ⑪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임원이었던 자 ▷ 그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경과
기타	② 결격사유자가 사원·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 등록신청 할 수 없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본업	│ 중개업
겸업	① 상가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임대업×) ②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관련 상담 ③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대상×) ④ 상가 및 주택의 분양대행 (토지・주택용지의 분양대행×) ⑤ 이사업체·도배업체 소개등 용역의 알선 (이사업체 운영 등 용역의 제공×) ⑥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취득알선,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

3. 금지행위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행정 처분	행정형벌	금지행위의 내용		
	1년/1천만	① 중개대상물(토,건,입,공,광)의 매매업 (※임대업×) ② 무등록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 부터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③ 법정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 는 행위 (※분양대행등 보수는 초과받아도 금지행위×) ④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언행		
등록 취소△	3년/3천만	⑤ 양도·알선등이 금지된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 ⑥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다른 개공의 중개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행위×) ⑦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일방대리는 허용) ⑧ 미등기전매를 중개하는등 탈세・투기조장 행위 ⑨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⑩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 서교란 행위	

(2) 누구든지 적용되는 금지행위(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행정 처분	행정형벌	금지행위의 내용	
적용×	3년/3천만	 특정 개공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개공등에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하지 아니도록 유도 개공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 개공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세보다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 	부동산 거래질 서교란 행위

4. 전속개공의 공개할 정보와 모든 개공의 확인 · 설명사항 비교

공개할 정보/설명할 사항의 내용	공개	설명	비고
물건의 기본적사항(소재지, 면적 등)	0	0	
상태(벽면·도배, 내·외부시설물상태)	0	0	
조건(입지조건 및 환경조건)	0	0	
권리관계(소유권·유치권 등)	0	0	※인적사항은 공개금지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0	0	※토지이용계획도 설명
거 래예정금액	0	0	
공 <mark>시</mark> 지가	0	×	※임대차는 공개×수 있다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 및 산출내역	×	0	
취득시부담할 조 <mark>세</mark> 의 종류 및 세율	×	0	

5.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① 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물건의 인도일시

- ④ 권리이전 내용
- ⑤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 ⑥ 그밖의 약정내용
- ⑦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8) 조건·기한 (있을 경우에 한하여) (9) 계약일

6.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사유

절대적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상대적 등록취소(할 수 있다)	
① 사 망·해산	① 6월 초과 휴업	
②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② <mark>전</mark> 속중개계약체결 후 정보공개×,	
③ <mark>결격사유에 해당【자료 1 참조】</mark>	비공개요청을 무시하고 정보공개	
□ 피성년·피한정후견심판을받은경우	③ 등록 기 준 미달	
ℂ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금 지행위를 한 경우【자료 3의(1)】	
ℂ 금고이상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	⑤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는 조치×	
⊜ 금고이상형의집행유예를받은 경우	(보증설정×) ⇒ 업무를 개시	
□ 공개공이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⑥ 거래계약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 법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를 사원·임원으로 두고도 2개월 이	⑦ 사 무소를 2 이상 설치하거나	
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④ 이 중등록	⑧ <u>1년이내에 3회이상 업무정지 또는</u>	

- ⑤ 등록증(성명·상호 포함)**양**도·대여
- ⑥ 이중소속
- ⑦ 1년 이내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 (절대적등록취소사유 중 ⑦은 제외)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행위
- ⑧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한 경우
- ⑨ 자격정지중인 소공에게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

- ⑨ 법개공이 겸업범위를 위반
- ⑩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2년 이내에 2회이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7.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사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및 과태료사유를 제외한 위반행위는 전부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서면 및 인장관련 위반행위 - 업무정지기준 3개월

-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중개가 완성된 때에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위반행위

-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두고도 2개월 이내 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③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 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1년에 1회 한 경우
- ①2③4 : 업무정지기준 6개월
- 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그 사 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기준 3개월
- ⑥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기준 1개월~6개월
- ⑦ 감독상명령 위반(업무보고, 자료제출명령등 불이행)한 경우
 - : 업무정지기준 3개월
- ⑧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기준 1개월

참격의 길잡이 찬병용 강사 - 2 -

8.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자격취소 : 하여야 한다	자격정지 : 할 "수" 있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② 자격증(성명포함) 양도·대여 ③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공에 소속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실형,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	 이중소속 - 6개월 인장등록×, 등록×인장사용 - 3개월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 설명시 근거자료제시× - 3개월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기재, 서로 다른 2이상 계약서 작성 - 6개월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 3개월 급지행위 위반【자료 3의(1)】 - 6개월

9. 거래정보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 지정취소 할 "수" 있다

-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운영규정 위반(3월이내 운영규정을 제정·승인×, 운영규정의 변경승인 받지× 운영규정을 변경, 운영규정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
- ③ 정보공개 위반(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정보를 공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공개)
- ④ **사**망 또는 해산
- 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인중개시법상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

- 010 1110 0001(0 1 1 11)			
3년/3천만	1년/1천만		
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① 이중등록한 자		
②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② 등록증(성명, 상호 포함),		
	자격증(성명 포함)을 양 도·대여한 자		
③ 개공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및 양수·대여 받은 자		
【자료3 금지행위중 (1)①~④를 제외】	③ 이중소 <mark>속을</mark> 한 개 공 등		
	④ 사무소를 2이상 설치 또는 임시중		
→ 양도금지 증서의 중개 또는 매매업	개시설물을 설치한 개공		
© 중개의뢰인과 직 접거래	⑤ <mark>정</mark> 보공개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 거래당사자 쌍 방대리	(개공으로부터 공개의뢰받지×정보공		
◎ 미등기전매 중개등 탈세·투기조장	개, 다르게 공개, 차별공개)		
□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⑥ 비 밀을 누설한 자(반의사불벌)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① 사 칭한 자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물에 대한 중 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 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 ④
 누구든지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자료 3의(2)】
 - □ 특정개공등에게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
 - © 특정개공등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
 - ©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 유도
 - ◎ 개공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
 - 개공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 게표시·광고하도록 강요, 유도

- □ 공인중개사가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유사 명칭 사용
- © 개공이 아닌 자가 사무소명칭·유사 명칭 사용
- ©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경우
- ⑧ 개공등이 4가지 금지행위를 한 경 우【자료 3의(1) 중 ①~④】
- ゔ개대상물의 매매업
- ©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한 경우
- ◎ 법정중개보수 및 실비 초과수수
- ◎ 거짓된 언행

11.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질서벌(과태료)

500만원 이하	100만원이하
① 개공: 부당광고 ② 없는물건 광고, ◎ 거짓·과장광고, ◎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중개대상×물건광고, 중개의사×물건광고, 하자등을은에 축소광고) ② 개공: 확인·설명등 의무 위반(성실정확하게설명×, 설명의 근거제시×) ③ 개공, 소공: 연수교육 이수× ④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위반 ⑤ 검독상명령 위반 ⑥ 협회: 감독상명령 위반 ⑥ 협회: 시정명령·개선명령·징계명령 위반 ⑧ 협회: 운용실적 공시× 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장관의 자료제출요구, 법 위반의 확인·추가정보의 게재조치등 요구에 불응	① 개공 : 사무소 이전신고× ② 개공 : 중개완성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설정 내용설명×,관계증서본교부× ③ 개공 : 사무소에 서류 게시× ④ 개공 : 옥외광고물에 성명 표기×, 성명을 거짓표기 ⑤ 개공 : 표시·광고시 명시할 사항을 명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⑥ 개공 : 사무소명칭에 법정 문자사용×, 부개공이 "공인 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 ⑦ 개공 : 폐업신고·휴업신고·재 개신고·휴업기간변경신고× ⑥ 등록취소후 등록증 반납× 7 자격취소후 자격증 반납×, 분실시 사유서 제출×

12. 부동산거래신고사항

- (1) 공통신고사항(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간등 모든 거래에 적용)
-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② 목적부동산(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종류)
- ③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④ 거래대금(실제 거래가격)
- ⑤ **개**공의 인적사항, 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 ⑥ 조건 또는 기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의 ①~⑥
- ⑦ 법인의 현황(법인의 등기 현황 및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
- ⑧ 목적,계획: <u>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에는 주택 취득 목적 및 거래대상</u>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1)의 ①~⑥
- ⑦ 계획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 참고 : 부동산거래신고시 제출 서류
- (1) 필수제출(공통):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2) 추가제출
 - ①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계결한 경우 :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 ②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③ 위 ②중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

13.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상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사유

정정신청(신고내용이 잘못기재)	변경신고(신고내용이 변경)
 ①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개공의 주소×) ② 거래지분, 거래지분비율 ③ 사무소의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④ 건축물의 종류(토지의 종류×) ⑤ 부동산등의 지목, 대지권비율 ⑥ 부동산등의 면적 	① 거래지분, 거래지분비율② 부동산등의 면적③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④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⑤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매수인 변경⑥ 다수 부동산인 경우 일부부동산변경

14.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상 행정형벌

2년 / 2천만원	2년 / 30%벌금		
	<u>누구든지 토지거래허가</u> ×계약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15.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상 행정질서벌(과태료)

과태료	사유	자진신고시
취득가액의 5/100이하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한 자	과태료 감면○
500만원 이하	그 기자으로 시고하도로 요구하 자	
	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제출×	과태료 감면×
3천만원 이하	① 거래계약체결×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 ② 거래계약해제×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신고를 한 자 ③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명령 을 받고도 제출× 자	과태료 감면×
300만원이하	외국인이 계약(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계약을 제외) 에 따른 취득신고 위반(60일 이내 신고×)	과태료 감면○
100만원이하	①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래당사자 ② 외국인이 계약 외에 따른 취득신고 위반 (6개월 이내 신고×) ③ 외국인이 국적변경에 따른 계속보유신고 위반 (6개월 이내 신고×)	과태료 감면○

공인중개사법령등 처리기간등



공인증개사법 한병용강사

구 분	내 용					
업무를 개시 하기 전에	① 업무보증설정신고 ② 인장등록 ③ 고용신고					
중개가 완성 되기 전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					
중개가 완성된 때	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②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③ 업무보증설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등 교부					
즉시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의 등록증 반환					
지체없이	① 업무보증설정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② 서류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③ 개공의 간판철거 기한(이전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정보를 공개한 전속 개공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 ⑤ 협회가 총회 의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⑥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②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필증 발급·재발급, 해제등확인서 발급					
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일 이내	지·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자격정지처분한 사실은 보고×, 통지×)					
5일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의 효력발생 : 지정·공고한 날부터 5일 후					
7일전까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집통보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7일 이내	①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의 등록사실의 서면통지 기한 ② 인장의 변경등록 기한 ③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 기한 ④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등록증반납 기한 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반납 기한					
7일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정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일 전까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통지 기한 : 교육일 10일 전까지					

	① 고용관계종료신고기한 :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②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기한: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 모니터링기관은 개공의 인터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0일 이내	- <u>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받은 신고센터는</u>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④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u>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u>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위④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조사 및 조치를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공의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기한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사항(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통보×) ② 행정처분(등록취소처분·업무정지처분)한 사항 ③ 신고받은 사항 ① 분사무소설치신고받은 사항 ②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종료신고받은 사항 ② 사무소이전신고받은 사항 ②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받은 사항
15일 이내	① 모니터링기관이 수시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경우 장관에게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는 기한 :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 내 ※모니터링기관이 기본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경우 장관에게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는 기한 : 매분기 마지막날부터 30일 이내
	② 업무보증금으로 배상 후 재설정 또는 공탁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의 보전기한: 배상 후 15일 이내 ③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청시 신고관청의 처분기한: 15일 이내 ④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장의 처분통지 기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15일 이내) ⑤ 선매자로 지정된 자가 선매조건등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25일 이내	통지해야 하는 기한 : 선매자로 지정통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신고서 또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 는 자에게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하는 기한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

	① 모니터링기관이 기본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경우 장관에게 결과보고
	① 포디더링기전에 기존포디더링 접구를 전표한 경구 영전에게 불피모고 서를 제출하는 기한 : 매분기 마지막날부터 30일 이내
	②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장관의 지정처분 기한 : 지정신청을
	받은후 30일 이내
	③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④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⑤ 부동산거래의 해제등 신고기한 :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⑥ 법인이 법인신고서, 매수인이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332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인신고서, 자금조달·입 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별도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⑦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경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 :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8) 장사등에 관한 법률상
	○ 중시중에 단단 답필증
	○ 매장(합장포함)한 사실의 신고 기한 : 매장(합장)일부터 30일 이내
	외국인등이 계약(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계약은 제외)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 취득시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60일 이내	※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u>국적을 변경</u> 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 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개략적인 예정공고(매년 2월 말일까지) 후 공인중개사시험의 공고해야
90일 전에	하는 기한 :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1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한다.
매월 1회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임법상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1회에 한한다.
1회	②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
11	할 수 있다.
	① 시 도지사가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는 기한 :
	합격자 결정·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② 공인증개사법상 포상금 지급기한 : 포상금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 지급기한 : 포상금지급신청
	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③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신고, 취득신고, 토지취득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u>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u>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내용등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원칙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 :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④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기한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개공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은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개시 : 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⑥ 토지거래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 ② 토지거래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신청 기한 : : 불허가 통지를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상 포상금 지급기한 :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전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전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3월을 초과하여 업무교육 통지기한 :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② 휴업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휴업기간 : 3월을 초과하는 휴업(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② 전속증개계약의 유효기간 :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원칙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 :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④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② 오민증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의 최근일부터 6개월 이내 ④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최독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시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로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형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2개월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상 포상금 지급기한 :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의 연수교육 통지기한 :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① 휴업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휴업기간 : 3월을 초과하는 휴업(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원칙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 :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④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기한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②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한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한국 2 공인증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한국 2 공인증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은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한국인들이 계약 외의 월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2개월 이내		9
전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의 연수교육 통지기한 :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① 휴업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휴업기간 : 3월을 초과하는 휴업(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② 전속증개계약의 유효기간 :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원칙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 :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④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기한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② 무독이한 사정이 없다면 개공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공인증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비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비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비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3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패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불허가 통지를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
전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의 연수교육 통지기한 :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① 휴업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휴업기간 : 3월을 초과하는 휴업(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② 전속증개계약의 유효기간 :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원칙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 :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④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기한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② 무독이한 사정이 없다면 개공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공인증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비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비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비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3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패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① 휴업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휴업기간 : 3월을 초과하는 휴업(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② 전속증개계약의 유효기간 :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원칙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 :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④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기한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② 공인증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은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의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파업시고 한 재등록한 개공이 페업신고 전비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을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매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2개월 이내	
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원칙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 :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④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기한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②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개공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연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은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개시 : 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3월 3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 :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④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기한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개공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은 17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 · · · · · · · · · · · · · · · ·
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④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기한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개공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은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배접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후 3개월 이내 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개공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은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참고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개시 : 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3월	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2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 : 6개월 범위 안에서 ·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은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개시 : 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은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보유신고기한: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개시: 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개공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 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개시 : 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 이 1년을 초과한 경우※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 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 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개시 : 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 이 1년을 초과한 경우※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 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6월	※참고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
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개시 : 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_	③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시 취득신고기한 :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④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시 계속 보유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개시 : 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
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 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 : 그 처분일부터 1년간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④ 장사등에 관한 법상 분묘의 철거기한 :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1년	③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 이 1년을 초과한 경우
		3년을 초과한 경우
⑤ 산가거묵인대차보증번산 인차이이 보장되는 치소 조소기가 · 1년		-
• • • • • • • • • • • • • • • • • • • •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장되는 최소 존속기간 : 1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장되는 최소 존속기간 : 2년		
2년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2년(연임제한 규정 없음)	2년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2년(연임제한 규정 없음)
③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③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개인(농업등 목적)의 토지이용의무 기간 : 취득일부터 2년 ※사업시행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4년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5년				
	①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 3년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 3년 ※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 5년				
	③ 업무보증설정 관련 공탁금회수 제한기간 :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 :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날 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⑤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⑥ 농지법상 농지의 최소 임대차 기간 : 3년(다년생식물재배지는 5년)				
3년	⑦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기한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 3기/2기 ※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① 주택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 ② 상가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① 주택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상가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주택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② 상가 : 규정 없음				
5년	① 시험부정행위자의 시험응시정지기간 : 시험의 무효처분일부터 5년 ② 시험이 신리도를 저하시킨 축제위원이 위촉제하 기간 : 5년				
	③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 5년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장기간 : 5년 이내 ⑤ 매수신청대리인등록과 관련하여 매수신청대리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사건카드 보존기간 : 5년				
10년	상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⑥ 농지법상 농지의 최소 임대차 기간 : 3년(다년생식물재배지는 5년) ⑦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기한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 3기/2기 ※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① 주택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 ② 상가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 ② 상가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① 주택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상가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상가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상가 : 규정 없음 ① 시험부정행위자의 시험응시정지기간 : 시험의 무효처분일부터 5년 ② 시험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의 위촉제한 기간 : 5년 ③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 5년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장기간 : 5년 이내 ⑤ 매수신청대리인등록과 관련하여 매수신청대리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사건카드 보존기간 : 5년 상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30년		존속기간 : 30년(다만, 1회에 한하여 30년간 연장가능)			
1/2	① 겸용주 우에는 규정을	택의 중개보수 적용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 · 주택의 보수규정을 적용, 1/2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보수 · 적용			
	②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의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비율 : 부과기준의 1/2 범위 안에서(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기준의 1/2 범위 안에서				
	3천!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상 취득가액의 5/100이하의 과태료와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기준의 1/5 범위 안에서			
4.75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함			
1/3	② 협회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위원(19명 이내로 구성)중 협회 회장 및 임원이 차지하는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3 미만으로 함			
1/20	주임법상 임대차기간 중 보증금·차임의 증액청구 : 20분의 1 초과× (감액청구는 제한 없음)				
5/100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이 법 전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중 보증금·차임의 증액청구: 100분의 5 초과× (※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경우는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음)				
10/100	협회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10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50/100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비율 : 100분의 50 이내				
100/100	협회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으로서 지급여력비율 : 100/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타	인원수	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부위원장 없음)			
		②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위원 : 19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보수 지급 시기	① 중개보수지급시기 : 약정한 날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② 매수신청대리업무에 대한 보수지급시기 : 약정한 날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			
	교육 시간	① 실무교육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직무교육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연수교육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꼭 숙지해 주시길 당부합니다.